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8(목) 평창군수(안전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맞게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용어를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